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November 15, 2019

[2019 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한국 5 위](#)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국세통계 조기공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 개국 간 협정문 타결](#)

[최신 세무예규판례](#)

2019 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한국 5 위

2019 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 개국 중 전년과 동일한 5 위를 기록함. 이는 2014 년 이후 6 년 연속 Top5 를 달성한 것이며, G20 국가 중 1 위 및 OECD 국가 중 3 위로 우수한 기업환경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주요국 순위로는 뉴질랜드 1 위, 싱가포르 2 위, 홍콩 3 위, 덴마크 4 위, 미국 6 위, 영국 8 위, 독일 22 위 등임.

부문별로는 세금납부(24 → 21 위)의 순위 상승, 법적분쟁해결(2 위), 전기공급(2 위) 등이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창업(33 위), 자금조달(67 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함.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자기검증서비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의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아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

OECD/G20 는 2015 년 이후 130 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Inclusive Framework)를 통해



삼일회계법인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임. 2019 년 5 월 다자간 협의체는 이러한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작업 계획에 합의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2 가지 접근법 (2 Pillar Approach)으로 추진하고 있음.

(Pillar 1)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 사용자 참여 접근법: 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하는 방법
-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 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하는 방법
-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 과세권을 인정하여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하는 방법

OECD 사무국은 2019 년 10 월 9 일,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등 Pillar 1 에서 제안된 3 개안의 공통점에 기반한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제안함. 동 통합접근법은 ①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②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계 기준, ③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 ④ 단순성·조세 확실성 추구 등의 원칙을 추구함. 특히 Pillar 1 에 포함되는 비즈니스 범위는 디지털 기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 (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하여 제안함. '소비자 대상 사업'의 정의는 추가 논의 대상임.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등

Pillar 1 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 (다국적 기업이 과세가 안되거나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잔존 이슈들) 방지를 위해, Pillar 2 (Global Anti-Base Erosion 또는 GloBE 제안이라 칭함)에서는 국외 소득에 대해 소득산입규칙을 포함하여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함. 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은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임. GloBE 제안은 디지털 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만 일부 산업은 제외(carve-outs)하는 것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디지털세 설계에 따라 기업 뿐만 아니라 법인세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 국가 간 과세권에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함. 현재 OECD 사무국 중심으로 디지털세의 경제·세수 효과에 대해 시나리오 별로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년 말경 발표 예정임. 향후 주요일정(안)은 다음과 같음.

- (Pillar 1 공청회) 2019 년 11.21~22 일
- (Pillar 2 공청회) 2019 년 12.13 일
- (다자간 협의체 총회) 2020 년 1.29~30 일

국세통계 조기공개

국세청은 오는 12 월 「2019 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앞서 국민들이 필요한 통계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 월 1 차 조기공개에 이어, 11 월 8 일 2 차로 86 개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그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현황: 2018 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63.8 만 개로, 2017 년 대비 13.7% 증가함. 그 중 수입금액 100 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3 만 개로, 2017 년 대비 12.2% 증가함.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을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전체의 23.5%)이 가장 많고, 도매업(20.9%), 서비스업(19.9%), 건설업(15.6%) 순임. 2017 년 대비 업태 별 비중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1.8%p 증가)한 반면,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의 비중은 2017 년 대비 각 1.9%p, 1.8%p, 1.0%p 감소함.
- 외국계 기업 현황: 2018 년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제외) 및 외국인 투자법인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 수는 총 10,580 개로, 전년 대비 1.5%(156 개) 증가함. 업태별로 보면 도매업이 3,832 개(36.2%)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 3,020 개(28.5%), 제조업 2,001 개(18.9%) 순임. 2018 년 기준 외국계 기업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2,408 개, 전체의 22.8%)과 미국(1,696 개, 16.0%)이 가장 많음. 다음으로 중국 882 개(8.3%), 싱가포르 729 개(6.9%), 홍콩 685 개(6.5%) 순임. 상위 5 개국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일본, 미국, 중국은 감소하였으나, 싱가포르(18.9% ↑)과 홍콩(14.9% ↑)은 증가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2019 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총 2,165 명으로, 2018 년 대비 68.2%(878 명) 증가함.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696 개, 개인이 1,469 명임. 2019 년 신고 금액은 총 61.5 조 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함. 신고자 유형별로는 법인 55.1 조원, 개인 6.4 조원임.
- 전자신고 비율: 2018 년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비율은 각 99.2%, 97.3%, 94.2%로, 100%에 근접함. 전년 대비 각 0.2%p, 0.8%p, 1.4%p 증가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 개국 간 협정문 타결

아세안 10 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 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 월 4 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 개국이 20 개 항목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였음을 선언하였으며, 2020 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RCEP 은 2013 년 5 월 1 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 년 가량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 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음. RCEP 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 로서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 의 1/3 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됨.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 년 최종 서명기로 합의함.

최신 세무예규 판례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판결의 쟁점은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② 전환사채로부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증여의제 대상인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고, ③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최초로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각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실시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대법 2016 두 1165, 2019. 9. 10.)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신주 및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대법 2011 두 10232, 2017. 2. 21., 대법 2012 두 27787, 2018. 3. 29. 및 대법 2016 두 30644, 2019. 1. 31.)의 법리가 기명식 전환사채에서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해외선주에게 지급한 선박 부품 지정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을 발주한 해외선주가 선박부품회사에게 선박부품을 납품하게 하고 지급받은 선박 부품 지정 수수료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포함)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면 선박 부품 지정수수료는 그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은 선박의 소유권이 인도 시에 이전되므로 건조 중인 선박은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도 없다면서 선박 부품 지정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후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함. (*대법 2019 두 43290, 2019. 8. 29.*)

과거 대법원은 선박 부품 지정수수료와 관련하여 해외선주가 '국내에서 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대법 2004 두 2059, 2005. 49. 29.*), 이번 판결은 건조 중인 선박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Contacts

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김상운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정중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pwc.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황철진
709-0759
chul-jin.hwang@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

이희태
3781-9083
heui-tae.lee@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최혜원
709-0990
hyewon.choi@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박진아
709-0797
jina.park@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금융세무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비영리기업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삼일회계법인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9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